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07. 2. 6 규칙 제197호
일부개정 2012. 12. 27 규칙 제356호
(타법규개정)
일부개정 2016. 4. 29 규칙 제466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2. 12. 27)

제2조(사용허가) ① 체육시설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.

② 체육시설물의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용사용허가서와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용사용허가 대장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3조(사용료) ① 조례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시간 이전에 선납하여야 하며,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사용 이전에 제시하여야 한다.

② 국민체육센터 내 체력단련실, 수영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기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. (개정 2016. 4. 29)

③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체육시설물에 대한 정기회원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용료 반환) ① 조례 제14조에 의한 사용료 반환 청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사용료의 반환액 산출은 사용 잔여시간에 따라 시간할하여 계산한다. 다만, 1시간미만의 사용 시간은 1시간으로 간주, 잔여시간을 산출 한다. (개정 2016. 4. 29)

② 반환액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반환한다.

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시세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한다.

제5조(관람권의 발행)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 및 초대권의 발

행은 발행 매수를 기재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전용자는 행사 당일 날 관람자로부터 받은 초대권 또는 관람권 등의 수량을 행사종료 즉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.

③ 조례 제12조에 의한 관람수입액의 사용료는 경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.

제6조(출입증발급) ① 출입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발급한다.

1. 운동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2. 공무 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
② 시장 또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, 정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용서식) 조례 및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다.

제 1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전용(사용) 허가신청서
제 2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전용(사용) 허가서
제 3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전용(사용) 허가대장
제 4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정기회원권
제 5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사용권
제 6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출입증
제 7호서식 출입증 발급대장
제 8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
제 9호서식 관람권 잔표 및 확인 대장
제10호서식 사용료 반환 청구서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2. 12. 27 규칙 제356호,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6. 4. 29 규칙 제466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(개정 2016. 4. 29)

화성시 체육시설 전용(사용) 허가신청서

처리기간 : 일

신 청 인		주 소		연 락 처	
		성 명 (법인.단체명)		생년월일 (법인번호)	
사용사항		주체육시설명		사용인원	
		부속체육시설명		사용기간	
		사용목적			
사용시설	중 계	T . V		라 디 오	
	부 속	전 기		음향설비	
	상행위	촬 영		애드벌룬	
		선 전 물		각종판매	
검인사항		관 람 권	매	초 대 권	매
기 타		사용료 감면 대상일 경우, 관련 서류 또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			

「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」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인, 서명)

화 성 시 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 (개정 2016. 4. 29)

화성시 체육시설 전용(사용) 허가서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허가번호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2">수허가자</td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>성 명
(법인.단체명)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3">허가사항</td><td>주체육시설명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사용인원</td><td></td></tr>
<tr><td>부속체육시설명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사용기간</td><td></td></tr>
<tr><td>사용목적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사용시설</td><td>중 계</td><td>T.V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라디오</td><td></td></tr>
<tr><td>부 속</td><td>전기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음향설비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상행위</td><td>촬영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에드벌룬</td><td></td></tr>
<tr><td>선전물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각종 판매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검인사항</td><td>관 람 권</td><td>매</td><td>초 대 권</td><td>매</td><td>출 입 증</td><td>개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기 타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8">「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」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화 성 시 장</td></tr>
</table>

[별지 제2호 이면] (개정 2016. 4. 29)

허 가 조 건
1. 「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해당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허가중이거나 사용 중임에도 당해 사용허가를 취소, 중지할 수 있습니다. 2. 사용자는 당해 체육시설에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 득하여야 하며, 설비나 철거비용은 자부담하여야 하며, 사용 종료 후에는 설치한 시설물을 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합니다. 3. 체육시설의 전용허가의 사용 권리는 양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. 4.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인사사고 및 시설물의 손괴는 사용자가 손해배상과 원상복구 등의 제반 책임을 져야 합니다. 5. 사용자의 사용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은 반드시 사용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.

[별지 제3호서식] (개정 2016. 4. 29)

화성시 체육시설 전용(사용) 허가대장

(체육시설명 :)

일련번호	수허가자 인적사항				사용기간	사용료	비 고
	성명	생년월일 (법인번호)	주 소	연락처			

[별지 제4호서식] (개정 2016. 4. 29)

화성시 체육시설 정기회원권

NO : 년도-시설번호-발행번호

회 원 권

○ 체육시설명 :
○ 성 명 :
○ 사용기간 :

년 월 일

화성시장 (인)

1. 본 회원권은 체육시설 입장시에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.

2. 본 회원권은 임의 양도가 불가하며 분실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안내소 전화 :

[별지 제5호서식] (개정 2016. 4. 29)

화성시 체육시설 사용권

NO : 년도-시설번호-발행번호(단체. 개인)

사 용 권
(용)

일 금 : 원
사용일 : 년 월 일
화성시장 (인)

주) 노인, 어른, 청소년, 군인, 어린이별 금액을 명시하여 인쇄

[별지 제6호서식]

화성시 체육시설 출입증

NO : 출 입 증 본 출입증을 소지한 자에게 화성시 체육시설의 출입을 허가합니다. 화성시장 (인)	1. 본 출입증은 화성시 체육시설물의 출입시에만 사용되며, 시설물 내에서는 항상 패용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용무가 끝난 후에는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. 본 출입증의 임의 양도는 불가하며 분실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안내소 전화 :

[별지 제7호서식]

출입증 발급대장

연번	성 명	주 소	사용일자	신 분 증 제출여부	발급사유

[별지 제8호서식] (개정 2016. 4. 29)

관람권 검인 신청서

경기(행사)명 :

구 분	요 금	발행매수	비 고
계		매	
특별관람권		매	
일반관람권		매	
단체관람권		매	
우대관람권		매	
초 대 권		매	

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,인)

화 성 시 장 귀하

[별지 제9호서식]

관람권 잔표 및 확인 대장

(체육시설명 :)

경기(행사)내용				관람권 종 류	검인매수	발행매수	잔표매수	관람액		비 고
경기명	기간	신청자	확인 (서명)					부과액	수납액	
				계						
				권						
				권						

[별지 제10호서식] (개정 2016. 4. 29)

사용료 반환 청구서

년도			납 부 년월일	기납부료	시간별단가	사용시간	정당사용료	반환료	납 부 자 주소·성명
관	항	목							

반환 사유

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.

년 월 일

청구자(납부자)
주 소
성 명 인
(생년월일)

위 사실을 확인함.

년 월 일

징수관
성 명 인

화 성 시 장 귀하

입금계좌	금융기관명	점포명	예금종류	계 좌 번 호	예금주명